

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정점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98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31.

발 의 자 : 정점식 · 박충권 · 김태호  
성일종 · 신성범 · 고동진  
서천호 · 김성원 · 엄태영  
김정재 · 백종현 · 구자근  
강대식 · 김승수 · 김용태  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먹는 물의 수질 기준과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, 먹는 물 관련 시설과 제품의 위생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가뭄이나 수원 고갈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 식수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비상 먹는 물 공급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뭄, 수원 고갈, 상수도 공급 장애 등으로 국민의 먹는 물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입 먹는 물 등의 긴급 공급 등 비상 먹는 물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뭄 등에 따른 식수 공급 차질에 대하여 안

정적 식수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52조의2 신설 등).

##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제52조의2에 따른 비상 먹는 물 공급조치에 드는 경비

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2조의2(비상 먹는 물 공급조치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뭄, 수원 고갈, 상수도 공급 장애 등으로 국민의 먹는 물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 먹는 물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.

1. 병입 먹는 물 등의 긴급 공급
2. 이동식 정수시설 설치
3. 임시 급수시설 설치
4. 그 밖에 먹는 물 비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

③ 그 밖에 먹는 물 비상 공급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2조(국고보조) 기후에너지환경 부 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52조(국고보조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제52조의2에 따른 비상 먹는 물 공급조치에 드는 경비</u></p> <p><u>제52조의2(비상 먹는 물 공급조 치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 뭄, 수원 고갈, 상수도 공급 장 애 등으로 국민의 먹는 물 공 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 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비상 먹는 물 공급에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병입 먹는 물 등의 긴급 공급</u> <u>2. 이동식 정수시설 설치</u></p>

3. 임시 급수시설 설치

4. 그 밖에 먹는 물 비상 공급  
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

③ 그 밖에 먹는 물 비상 공급  
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  
통령령으로 정한다.